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0월 20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성 윤 모

● 법률 제17536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5조제2항 중 “고소가 없으면”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